

표준논단

친일논쟁의 논리적 오류

해방 이래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쟁중의 하나는 친일행위 청산에 관한 것이다. 대선, 총선 시절마다 후보 친인척의 친일행적 논란과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은 언론의 단골메뉴였다. 수 년전 친일청산에 관한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안 “인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통과되었으나 새로운 혼란의 시작인 뿐이다(2004-12-29, 법률 제07361호).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200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3,090명을 발표하였고(2005-8-29), 2008년 새로 1,686명이 추가된 4,776명의 친일명단을 공개하였다(2008-4-29).

친일명단의 공개는 인터넷에서 언제라도 검색과 확인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의 혼란과 논쟁은 사라지게 될 것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책방이나 도서관에 가보면 친일행적의 자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간 친일행적의 자료가 없어서 친일청산이 안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과거 자료와 증거가 너무 많아서, 자료간의 모순이 너무 많아서, 모함과 거짓증언이 하도 많아서 친일청산이 안된 것은 아닌까.

1954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 독도문제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미국(지명위원회), 일본(방위백서), 중국(동북공정) 등 외세에 놀아나고 있는데 아직도 이웃사촌끼리 삿대질하는 모습에 가슴이 저러다.

해방 되자마자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은 몹시 후회스러운 일이다. 이미 확인된 친일파에게서 국가 재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에 새로운 친일파를 발굴해서 화폭이라도 하겠다 는 것인가. 과거의 망령에서 헤어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조 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053-420-4899

최근 보도된 KBS 이승만 특집을 보면서 새로운 “친미진상규명”의 위협을 느낀다(2008-9-6). 빈 훗날 세월이 바뀌면 “친중진상규명” 운동이 없을까라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진실은 없고 주장만이 광우병처럼 범람하고 있기에 소설가 김훈은 우리 사회의 언어가 소동이 아닌 공격의 무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진실은 의심쪽에 있다는 그의 논리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만을 믿어야 한다는 데카르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모르는데 그것은 자신의 당파성이 정의되고 인기 때문”이라는 그의 지적은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를 갈파하고 있다(2008-9-10).

친일 신상에 관한 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예외될 수 없다. 저명인사의 모르고 있었던 저명인사의 친일행적 보도에 우리는 성악하고 만다. 그 동안 친인파를 존경하여 왔더니, 이런 혼란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혼란의 끝은 과연 어디인가, 친인행적에 관한 고발은 과연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또한 독립행적과 친인행위가 뒤섞여 있다면? 신관사포의 수정을 거부한 춘향의 절개는 아름답다.

그러나 왜장의 시중을 사원했던 논객들 아무도 친일파로 비난하지 않는다. 그녀의 최후기 없었다면 비난한 이가 적지 않았으리라. 과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적장과 함께 신화하였기에 평가가 아름다운 것이다.

친일파에게 들을 던지기에 앞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전후사정을 파악한 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추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음사오적이 역사에 존재하는 한 친일매국에 관한 우리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모편 타당한 기준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친인파는 모두 이완용 같은 놈”이라는 감정의 폭발과도 같은 것이다.

친일에 관한 우리의 독특한 국민 정서로 인해 한번 친일파로 낙인되면 사실확인도 되기 전에 돌아올 수 없는 “저편”으로 추방되는 것이다. 이완용의 친인행적이나 안중근의사의 독립공적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겠다.

그러나 친인파가 독립유공자로 문갑하거나, 독립운동가가 친일파로 물리는 경우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구성원 전체는 혼란과 분노로 오랫동안 고통 받게 된다. 과거사 발굴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친인명단은 신중해야 한다. 친인행적의 평가는 국민정서를 아우르는 선동적인 행사가 아니라,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명백하고 “논리적”이어야만 최대다수의 최대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믿기에 그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논리적인 접근 방법에는 크게 연역법(deduction)과 귀납법(induction)이 있다. 과학적인 증명으로 자주 사용되는 연역법은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의 예로 요약할 수 있다.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역법은 완벽한 전제를 가정하고 있으며, 가정(대전제)이 옳다면 결론은 항상 옳다. 그러나 가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납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인류의 진화기 시작한 이래 인간은 모두 죽었기에 대전제(“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귀납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귀납적 증명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귀납적인 결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지 하나의 반례(counterexample)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대전제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는 인간을 “하나”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다. (종교적 주장은 논외로 하고) 반례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전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우리는 “가정”하는 것이나 언제든지 역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두 가지 선택에서 하나의 진위만을 판단하는 특수한 증명이 있다.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소개된 귀류법(proof by contradiction)은 이분법적 결론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면 소수(prime number)가 무한한 것을 증명하고자 할 때, 소수가 유한한 것으로 가정하고 잘못된 가정으로 야기되는 오류를 파악하여 가정의 부정명제로 결론하는 것이다.

즉, “소수는 유한하다”고 가정하자. 유한개 소수의 집합은 $\{P_1, P_2, \dots, P_n\}$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유한개의 소수를 모두 곱한 것에 1을 더한 수 $Q = (P_1 \times P_2 \times \dots \times P_n) + 1$ 는 정의에 의해 소수이다.

그러나 Q 는 이미 정의된 유한개의 소수 집합에 속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소수이므로 “소수는

유한하다"는 가장은 모순된 것이다. 모순은 잘못된 가정에서 야기되었으므로 가정의 역명제 - 즉 "소수는 무한하다"를 증명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이분법적 논리로는 법률적 판단이 있다. 정의의 신이 있다면 법률적 판단은 오류 없는 완전부결한 것이리라.

그러나 인간세상의 재판에서는 증거의 부정확성, 추리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판결오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법률적 정의는 범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진성유죄) 선량한 시민을 무죄판결로 (진성무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선고판결에는 두가지 오류가 - 무죄임에도 억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가성유죄), 또는 유죄임에도 진범이 증거불충분으로 방면되는 경우(가성무죄) -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재판의 결과는 유부죄로 결정되거나 편결오류에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결정할 수 없는 회색지대의 존재를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다.

법률적 편결오류에는 억울한 피해 또는 정의의 훼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오류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선하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유럽의 배심원제도는 개인의 기치기 사회정의에 우선하는 사례이며 판단기준은 국가와 시대마다 다르다.

영국의 초기 배심원제는 12명 반장인치로 판결을 했다.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12명의 배심원 전원이 유죄판결을 내야 했다.

1790년 도입된 프랑스의 배심원제는 12명의 배심원 중에 10명 이상의 다수결 판결을 원칙으로 채택했으나, 1808년 7대5로 바뀌었다.

10대2의 판결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유죄판결의 비율이 적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이 그 변경 사유였다. 이후 수학자 라플라스는 7대5 판결의 경우 오판 확률이 대략 3분의

1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즉, 3명 중 한명 잘못 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임) 8대4의 경우에는 오판 확률이 8분의 1로 줄며, 12대0의 반장인치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오판 확률이 대략 1만분의 1로 떨어진다는 것이 라플라스의 계산결과였다.

논쟁 끝에 프랑스 배심원제는 1830년에 8대4로 바뀌었다가, 1835년에 다시 7대5의 다수결 방식으로 정착됐다(홍성욱 교수, 중앙일보 2004-1-15).

불만서 다수결 평결과 달리 미국 배심원제도는 유죄평결의 반장인치를 요구하고 있다. 배심원 중 한명이라도 무죄를 주장하면 유죄를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유죄아님(not guilty)"의 경우 비록 범죄가 의심되더라도 피의자는 석방된다.

유죄와 무죄의 추정확률이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50%라면 인간적인 정서는 무죄를 선택하게 된다. 50%의 불확실성에 유죄를 걸은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12명의 배심원 전원인치 판결은 개인적인 오판확률이 50%에 이르더라도(동전을 던져 결정하더라도?) 모두가 실수로



유죄평결을 내릴 확률은 사천분의 일 보다도 작다(0.5의 12제곱, $0.512 = 1/4096$).

개인적인 판단의 정확도가 90% 이상이라면 배심원 전원인치의 유죄평결은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억울하게 사형을 받은 경우가 종종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얼마나 잘못 안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가.

배심원제도의 만장일치 평결은 정의가 “약간” 훼손되더라도 판단오류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모든 범법적 판단에서 비록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다(라도(가성부죄) 평결오류로 인해 1명이라도 억울하게 사형(가성유죄) 당하는 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배리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다수결 평결 배심원제도의 프랑스보다 범죄는 늘고 있다고 한다. 선의의 피해를 줄이려나 보면 “Oj Simpson 사건”처럼 모든 증거가 유죄를 암시하더라도 “유죄아님(not guilty)”으로 평결될 수 있다.

“유죄부죄, 부죄유죄”의 사회적 불의는 배심원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 예상된 부작용이다. 전문성 결여나 매수의 위험 등 배심원제도는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판단오류를 최소화하는 더 이상의 법제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주: 1990년대 초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 겸 탤런트인 Oj Simpson이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당일 새벽 술에 취해 부인의 피로 낳자한 염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복격되어 유력한 살인용의자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단의 절묘한 논리로 무죄 방면된 사건임.)

유럽의 배심원제도와 달리 우리의 친일진상규명은 정의구현이 개인의 가치에 우선하고 있다. 개인의 피해가 “약간(?)” 있다라도 사회정의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정마 유치원이 친일병단에 포함되자 그의 후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독립운동을 했을지

언정 친일은 무고하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원고측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마의 친일행적을 나열한 것이며 피고측은 무수한 독립공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인간의 한 평생이 정의로 도배된 적도, 흉악범의 전 생애가 악행으로 인관된 적도 없을진대 거의 결론 없는 공방으로 끝날 것이다. 문제는 독립공적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건의 친일행적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 한건의 배신으로 평생 쌓아온 의리의 금자탑을 망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던가. 이미 확인된 친일행적은 그만두고 이제부터의 친일진상규명에 배심원의 평결논리를 도입할 수는 없을까? 이블테면 친일과 맺이 온 좋게 빠져나가더라도 억울하게 친일누명을 쓰는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립(김병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가 관아 백일장에서 흥경태난과 동조세력에 대한 비판의 글로 장원을 하고 보니 조상(김익순)을 비난한 것이었다. 그 충격으로 비판한 그는 인생을 방랑시인 김삿갓으로 한 세상을 지냈다. 다행하게도 나는 집안에 자랑할 만한 독립유공자나 숨기고 싶은 친일파가 있지는 않다.

이블테면 “아직” 독립공적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또는 “아직” 친일행적이 발각되지 않은 것이다. 불렀던 집안 어른의 독립행적이 발각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가. 반면 모르고 있던 친인 조상을 알게 되는 순간 김삿갓처럼 세상은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자랑스린 조상의 업적에 대해 침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수치스린 조상에 대해 침묵할 권리를 가질 수는 없을까? 평범한 대한민국 시민에게 느닷없이 “너네 조상은 친일파리며” 옥박지른다면 칭마의 후손이 아니라도 소송할 만큼 충격적이다.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처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조상도 아닐진대



얼굴도 못 본, 한 푼 도와준 적 없는 조상의 업보를 후손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 혹사는 친일후손이 부와 명예를 독점하고 있다고 하나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

정치는리로 시작부터 잘못되었으나 아직 해결은 가능하리라고 보며 핵심은 법률에 있다(친일재산환수법이 있음에도 국가재산이 친일후손에게 도둑맞은 일은 법조계의 사촌심을 걸고 해결해야 마땅하다).

우리의 친일논쟁에는 논리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조상과 대한민국 국민을 무죄(선량한 시민)로 가정하고 있다. 유죄(친일)의 증거가 없거나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가 되나 언제라도 새로운 친일행각이 발견되면 즉시 유죄를 결론한다.

우리 모두 "태생적으로 무죄"라는 국민정서에 매우 그럴듯한 이 대전제는 귀납논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즉 반례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대전제는 언제라도 붕괴되어 역명제인 유죄(친일파)로 돌변한다. 일단 유죄가 선포되면 발견된 무죄의 반례(친일 행적, 증거, 증언 등)가 혹 불리더라도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된 후이므로 그 피해는 가히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고 만다.

생전에 사회적, 종교적, 분학적, 정치적 저명인사였다라도 사후에 발견된 한응금의 친일행적으로 친일파로 내몰리는 사례를 이미 수도 없이 목격하였다. 비록 임박하게 고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백년도 넘은, 증인도 없는 사건에 증거나 고증이란 무의미할 뿐 관정의 오류는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다.

밀저야 본전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저명인사의 고발에 회연과 통쾌감을 느낀다면 마니사냥에 다름아니다. 그 동안 위증과 조작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공개처형 되고 매장된 후, 빈 훗날 "이 세는 말할 수 있다"식의 결론과 부정이 반복되어 왔다. 더욱 보장된 친일진상규명법으로 친일명단은 날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계 승원 것만으로도 친일이 될지 모를 일이므로 우리는 조상의 과거로 인해 언제 친일파 집안으로 고발될지 모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마니사냥식 고발이 난무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안전지대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독립유공자이거나 친일파일 수는 없다. 대부분 독립군도 아니고 메국노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유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일진상규명에는 국민정서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충분한 양의 친일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언론보도만으로 충분히 치명상을 줄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무죄"라는 가정은 무고한 친일파가 대량생산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일청산의 귀납적 오류는 귀류법적 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즉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명제를 가정하고 야기되는 오류를 파악하여 대전제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다. 복색은 부당한 친일행위의 피해자를 최소로 하자는 목적에서이다. (보훈은 사고를 가정하고 있기에 유죄추정의 원칙이 그리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우선 "우리는 모두 유죄(친일파)이다"라는 명제를 가정한다. 이미 확인된 매국행적이나 명백한 독립공적에 논란의 여지는 없다. 분제는 독립행적과 친일행적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 경우 독립행적을 친일행적보다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할 수 있다.

몇 건의 친일행적이 있더라도 독립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행위 1건 = 친일행위 2건 등) 전체 독립행적의 총량이 친일행적을 능가하였다면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친일행적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도 안되는 친일파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독립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유죄(친일)의 가정이 유지되기에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약점은 있다.

그러나 친일을 매국이란 의미의 거창한 명제가 아니라 그 시대 일본어 교육을 받고, 일본이름을 갖고, 농회에서 배급을 받거나, 한번이라도 인장기에 인사했던 일상적인 것을 포함한다면 친일에서 자유로울 조선민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진정한 독립투사가 있다면 조국을 등진 채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신 분이거나 이미 청산리 전투에서 전사하신 분이다. 친일파의 기록은 이미 파악된 그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건국은 기록조차 필요 없게 된다. 돈과 시간을 들여 건국은 가족이나 다름없는 농포의 치부를 거둬헤서 들추어내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일제시절의 기억은 중앙청 폭파로도 지울 수 없는 분명한 추억이 되고 말았다. 즐거운 추억은 결코 아니지만 복수를 위해 식음을 전폐할 필요는 없다. 어제보다는 오늘과 내일이 소중하기에 더욱 그렇다.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제는 친일파를 용서하라고 한다. 생전에 일본을 미화하는 발언으로 나의 복장을 뒤집었던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선친은 불행한 시대를 치열하게 사셨다. 일제시대와 학도병, 공산정권과 숙청의 위협, 6.25

동란, 자유당과 유신정권의 혼란과 부조리를 식민시절과 비교하여 실과하셨고 나는 친일의 단맛도 못 본 부친을 “친일파”라며 적렬히 반발하였다.

이 땅에서 뚜렷한 독립행적 하나 없이, 없는 듯 숨어 지내던 비겁한 이들이 해방되자마자 친일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친인과 청산을 선봉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파멸지한 일이다. (누구는 친일의 기록이 조작되었다고 한다.) 누구라도 친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땅에서 일제시대를 살아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친일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일제시대에 친일 않고 생존이 가능하였겠는가? 반인 또는 항일을 하였다면 그 사실 열사로 서거할 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친일의 흔적이 없기에 독립유공자가 되느니, “당분간” 친일로 남는 것이 자리리 속 편하겠다. 독립행적이 당장은 비록 찾을 길 없더라도 집안 어른인 한 분이 백주 대낮에 여는 일본 순사의 맥산을 잡아 패대기친 사신을 누가 너지시 “증언”해 준다면 언제라도 나와 우리 집안은 독립유공자가 될 터이므로.

진품병품의 위조논란처럼 증언과 증거의 진위 논란은 생각만으로도 골치 아프다. 세기를 넘긴 시점에서 볼 때 친일행적의 명백한 판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과거사 청산보다 미래 청사진이 더 소중한 것은 아닌지. 누구는 아무개 친일행적의 1/10도 안 되니 용서하자는 식의 확인불가능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또한 거짓증언도 구분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친일행적의 거짓증언은 파괴적이며 회복불능이므로 “궁형”으로 임단하여 “대한사기”를 집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연예프로 “칭찬합시다”처럼 과거사 발굴은 독립유공자로 국한하였으면 한다.

저병인사의 추행이 고발되면 잠시는 통쾌하나 즐거운 일은 아니다. 반년 악질로 알고 있던 이의 선한 행적을 사후에라도 알게 되는건 즐거운 일이다. 그러기에 모르고 있었던 독립행적의 1발골소식은 당연히 소중한 인이 될 것이다.

조지훈은 지조론에서 이원용은 자신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매국하였고 해방전에 죽었으니 친일의 뜻을 굽히지 않고 후회 없는 한평생을 보낸 것이 아니겠냐고 매국노의 지조를 냉소하고 있다.

한 인간의 신념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한때의 거룩한 행위가 어느 순간 불법이나 매국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나는 소시적 양담배를 피우고 양주를 마셨으며 햄버거와 콜라 등을 지금도 즐기고 있다.

나라가 친미정책을 유지하여 미국시장에 자동차,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어찌면 매국적일 수 있는 위험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번 훗날 사실이 바뀌어 나의 친미행적이 매국으로 평가된다면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나의 후손이 조상의 무분별한 친미행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기에, 또한 나의 논지를 주장하기 위해 온갖 가능한 애국애족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노래한 시인 윤동주는 그도 사람이었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희망”한 것은 아니었을까? 정녕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다면 ... 그건 사람도 아니다.



| 기술 표준 2008.10

영어를 잘하려고 십수년간 교육을 받았고, 미국에 잠시 다녀온 것을 은근히 사랑하고 있으며, 주변에 영어 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 친구가 몇 있으며 영어로 된 명함을 공공연하게 들고 있다.

이원용은 서세동침의 혼란한 시절 “일본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우리